

건설감리 통합화를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f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Integration

황 은 경*, 김 수 암**
Hwang Eun Kyoung, Kim Soo Am

Abstract

Fields of domestic construction supervision are divided into architecture, electric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ire by the individual laws. Between each supervision are lack of relationship. So it bring about performance degradation, supervision fee increasing and dispute. The purpose of this basic research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method of each supervision.

키워드 : 건설감리, 개별법, 건설감리 통합화

Keywords : construction supervision, individual law, integration of individual supervis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건설공사 감리 규정은 1963년 건축법상에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처음 명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고층화에 대응하여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해 1984년 공사감리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건설공사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감리인력부족 및 기술능력 미흡을 보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민감감리전문회사를 신설하는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4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주택건설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강조되면서 1995년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감리가, 1997년에는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감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규정되었고, 1998년 통신설비공사에 감리가 도입되어 분야별로 감리제도가 다기화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공종별 감리업무의 다기화는 각 개별법령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간의 상충도 발생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성 저하, 예산낭비 등 공사감리 수요자의 부담 증가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 공종별 감리는 건축물의 개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개별분야의 검토 및 확인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종합적인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성능 그리고 안전에 대한 체계가 수립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정부 부처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관련 개별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감리의 통합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공학박사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주로 문헌고찰 및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우리나라 감리제도 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소관 관계 개별 법령을 도출하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역 체계, 기술자 자격기준, 기술자의 업무 범위 등 업역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감리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문제점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건설감리 제도의 통합운용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편, 감리는 건축생산단계를 토대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감리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서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시공감리로 한정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감리관련 제도 개요

앞서 언급했듯이 건설감리는 1960년대 건축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독립기념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과 건축물의 대형화·전문화됨에 1980년대 후반부터 건축물의 규모 및 성격, 건축공정 등에 따라 다기화 되었다.

표1. 건설공사 감리대상 검토

	공공공사	민간공사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건축	엔지니어링법	-발주청 시행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건축사법		-연면적 5천 m ² 이상 -5개층 연속 3천 m ² 이상 -소규모 건축허가대상
	주택법		-건축허가대상 중 다 중이용건축물
전력기술관리법		●	●
	정보통신사업법	●	●
	소방공사업법	●	●

(●: 감리대상 모든 건축물)

먼저 건축감리의 경우 발주기관이나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각기 운용하고 있으며, 각 관련법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등 각 공종별 설비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공종별 감리관련 규정 항목 도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감리 규정내용 가운데 감리의 종류, 감리의 제한, 감리업역 등록, 감리대상 범위, 감리원 자격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감리관련 규제 조사

구분	건축공사감리		전기공사감리	소방시설 공사감리	정보통신 공사감리
근거 법령	건축법 ·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전력기술 관리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감리 종류	· 법 제22조 · 법 제22조의2 · 법 제27조 · 법 제27조의2			· 법 제11조 · 법 제18조 · 법 제12조	· 법 제9조
감리 제한		· 법 제51조	· 법 제24조	· 규칙 제20 조	· 법 제24조 · 법 제12조 · 법 제12조
감리 업무 등록 기준		· 법 제28조 · 시행령 제53조 · 법 제54조		· 법 제14조 · 법 제27조	· 법 제4조 · 법 제2조 · 정보통신공사 업법 제2조 · 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 제 4조 · 기술사법 제6 조
감리 대상 범위	· 법 제21 · 법 제19	· 법 제50조 · 법 제5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법 제20조 · 법 제27조	· 법 제2조 · 법 제7조
자격 기준	· 법 제21 · 법 제19	· 법 제51조의2		· 법 제21조	· 법 제2조 · 법 제8조
감리 원의 배치 기준	· 법 제21 · 법 제19	· 법 제52조 · 규칙 제32조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제7조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별표1	· 법 제24조 · 법 제26 · 규칙 제13	· 법 제12조 의2 · 법 제22조	· 법 제18조 · 법 제11조 · 규칙 제16 조
감리 원의 업무 범위	· 법 제21 · 법 제19 · 규칙 제 19조의2 · 법 제19 조3	· 법 제52조 · 규칙 제34조 · 법 제28조의7 · 법 제54조의3	· 법 제24 · 법 제24조 의2 · 법 제27조 · 법 제30조	· 법 제23조 · 규칙 제22 조	· 법 제16조

당초 전기, 소방, 통신분야에 대한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리전문회사가 해당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해당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간부처가 다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제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해서 해당법령에 의한 감리업에 각각 등록하여 관련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표 3. 개별 감리별 감리업역의 종류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설계사무소에 의한 감리	-종합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공사감리업
-감리전문회사(4종): 종합감리전 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 감리전문회사, 설비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업 -전문감리업	-총역업	-일반소방시설공사감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감리업(전기)

먼저, 분야별 감리의 종류를 살펴보면 건축감리는 설계 사무소에 의한 감리와 4개의 감리전문회사로 나누어지며

전기는 종합감리업과 전문감리업, 소방은 전문소방감리업과 기계·전기일반소방 감리업으로 나뉘고, 정보통신은 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어 있다.

다음으로 각 업역별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건축·전기·소방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준하고 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표4. 각 업역별 감리업체 등록기준

구분	건축공사감리	전기공사감리	소방시설공사감리	정보통신 공사감리
관계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5	전력기술관리법 별표 5	소방시설공사업법 별표 1	정보통신 공사감리
기술 인력	총합감리회사	종합감리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기술 인력	수석 5인 이상, 감리사 보 20인 이상	특급 2인 이상, 고급 2인 이상, 중급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	소방기술사 1인 이상, 특급 각 1인 이상, 고급각 1인 이상, 중급 각 1인 이상, 초급 각 1인 이상	
자본	5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기준 없음	
기술 인력	토목감리전문회사	전문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기술사법 제6조
기술 인력	수석 3인 이상, 감리사 보 12인 이상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 감리원	특급 1인 이상, 고급 또는 중 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자본	1.5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기준 없음	
기술 인력	건축감리전문회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전기분야	
기술 인력	수석 1인 이상, 감리사 보 12인 이상		특급 1인 이상, 고급 또는 중 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자본	1.5억 원 이상		기준 없음	
기술 인력	설비감리전문회사			
기술 인력	수석 2인 이상, 감리사 보 8인 이상			
자본	1억 원 이상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범위를 살펴보면, 건축감리는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분야는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5. 각 분야별 감리업체 등록기준(기술자격 중심)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근거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특급 감리원	기술사, 건축사	10년	○	2년
기술 인력	기능장취득 이후	-	5년	-
수석 감리사	기사취득 이후	19년	8년	8년
	산업기사취득 이후	22년	11년	12년
고급 기술자 감리사	기술사, 건축사	○	-	-
	기능장취득 이후	-	2년	-
	기사취득 이후	9년	5년	5년
	산업기사취득 이후	12년	8년	8년
	기능사취득 이후	-	-	14년
중급 기술자 감리사 보	기능장취득 이후	-	○	-
	기사취득 이후	○	2년	3년
	산업기사취득 이후	2년	5년	6년
	기능사취득 이후	-	10년	-
초급 기술자	기사·산업기사	-	○	기사1년
	기능사	-	6년	2년
				6년

그리고, 각 분야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감리기간, 공종의 난이도, 공사의 종류, 공사의 규모,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7(설비공사의 감리) 및 주택법 제24조의 2(감리자의 업무협조)에서는 각 공종별로 이루어지는 감리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 선정 및 업무협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6. 각 분야별 배치기준 비교

구분	근거 법령	구분기준	배치기준
건축 공사 감리 대가 기준 별표1	건설 공사 감리 대가 기준 별표1	-구분기준 없음 -현장설정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책임감리 최소 2인(공사비 15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 시공감리는 최소 1인 이상을 배치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따라 감리원수 조정 가능 -공사예정가격의 70/10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감리원수의 50/100 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 가능. -기타 별표 1참조	
전기 공사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전력 기술	100억원이상 발전· 송전 등	특금감리원, 초금감리원 이상 고금감리원, 초금감리원 이상 중금감리원, 초금감리원 이상 초금감리원 이상
소방 시설 공사 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 시설 공사 업법 시행령 별표4	10만㎡이상인 특정소방대상을 또는 지하층 을 포함한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을 3만㎡이상 10만㎡미만인 특정소방대상 률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이상 30 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을 물분수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을이나 연면적 이 3만㎡이상인 아파트 5천㎡이상 3만㎡미만인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을 5천㎡미만인 특정소방대상을	소방기술사 취득자로 2년 이상 소 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 특금소방감리원 1인 이상 고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중금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초금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정보 통신 공사 감리 제9조	정보통신 공사 업법 시행령 제9조	총공사비70억원이상 총공사비30억원~70억원미만 총공사비5억원~30억원미만 총공사비5억원미만	특금감리원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중금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초금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3. 건설감리의 문제점 도출 및 통합운영 방안 모색

3.1 건설감리 규정의 다기화에 따른 문제점 도출

1) 단일용도 건물에 다수의 감리법 적용

원칙적으로 감리의 업무는 발주기관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가 같으면 감리자의 역할이나 감리내용이 동일해야하나 건축감리의 경우 발주기관, 건물규모 등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다수의 감리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태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대의 기준에 따라 다시 건축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발주주체는 다를 수 있으나 공사의 내용은 동일할 수 있고, 각 법령이 공사 내용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는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관계법령간 연계성 미흡

감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부실시공에 의한 건설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감리업무의 범위도 공종별로 세분화·다원화되어 왔다. 이렇게 공종별로 감리업무가 다기화됨으로써 각기 그 기준이 다른 법령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간의 상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각 법령간 업무내용과 기준 등 관련규정이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달라 그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3) 규제 내용의 불일치 및 중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조의2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법 시행령 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서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 등 22종의 공사를 규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면책임감리에서 감리대상 제외 공종을 둔다는 것은 현행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입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2항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시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의 안전점검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

4)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의 어려움

각 공종별로 개별감리를 실시하면 각 공종에 대한 시공정밀도 및 성능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은 이를 각 공종작업을 통해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기 때문에 각 공종별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공종이 상호 연계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종만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한계가 애매해진다. 뿐만 아니라 장기계속공사 수행시 각 공종분야별로 감리원이 투입됨으로써 공정 전체에 대한 공정관리의 연계성이 단절되어 총체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선행공정과 후속공정 감리자간의 업무범위 및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하여 선행공정으로부터 발생된 공기 연이나 시공부실 또는 공사비 초과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후속공정에 전가되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과 주택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관리자 제도를 관계법에서 규정해주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법적 효율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관리비용의 증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특징은 건설공사 과정에 따라 참여 주체가 업역화되어 있으며, 각 업역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건설공사 관리가 업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중복과 중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현장에 여러 개의 감리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각각의 업체 관리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간접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가 곤란하다.

3.2 건설감리관련 개별규정간 문제점 도출

일반적으로 전기 등 설비감리 규정들은 대부분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감리대가기준, 감리원 자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되어 거의 유사한 규정내용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각 개별법령의 특성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감리의 정의, 감리업무 용어, 감리원 관련 기준 등이 다소 상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 가운데 감리비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감리원

관련 기준 규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자격등급 및 자격 기준의 형평성 부재

감리원의 자격등급을 건축감리의 경우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의 3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나 나머지 설비감리에서는 특급,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인건비 산정이 복잡해 진다.

또한 각 자격등급별 자격기준의 경우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 감리의 경우 거의 비슷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건축감리는 타분야에 비해 다소 강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사취득 이후 특급감리원·수석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의 경우 19년이 소요되나 전기·소방8년, 정보통신 9년 등 건축분야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감리업 등록기준 및 감리원 배치기준의 형평성 부재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는 기술사 없이 특급감리원만 있어도 감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술사가 적게 배출되는 소방감리업은 소방기술사가 반드시 있어야 감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층과 지상층 합계 30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소방기술사가 현장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개별법의 감리원 배치기준보다 매우 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축감리 분야에서도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주택법에 의한 배치기준이 상이하다. 즉, 건설기술관리법의 경우 단순한 공종, 보통공종, 복잡한 공종 등 3단계로 그리고 건축사법의 경우 제1종(단순), 제2종(보통), 제3종(복잡)으로 규정해주고 있는 반면, 주택법의 경우 총공사비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배치기준 산정방법이 다르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사법의 감리원 배치기준의 경우 배치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난도 공사나 공사단계에 따라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못할 수도 있다.

3.3 건설감리 통합운영방안 모색

이상의 건설감리 개별법령의 현황과 각 공종별 감리가 개별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건설감리의 다기화라 할 수 있다. 즉, 건축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주자나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축감리가 결정되고, 각 공종별 개별 감리가 건축감리와 상호 긴밀한 연계 없이 진행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공기 및 관리비용 증가, 건축물의 성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공종별로 다기화 되어 있는 각 개별감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업역과 그 주무 정부부처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단시간내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건설감리 통합 단계를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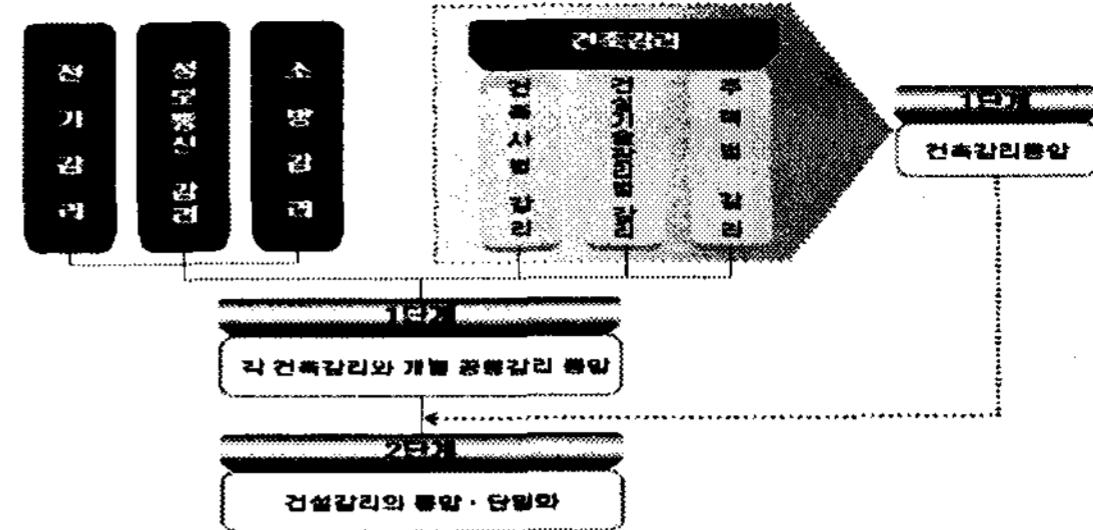


그림1. 건설감리 통합 운용 방안

먼저 1단계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건축감리 분야의 통합으로써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등으로 나누어진 감리체계를 하나의 건축감리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 개별 건축감리와 각 공종별 감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관련 규정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령 규정에 부합된 업체에 대해 단독적으로 모든 건설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소극적 통합단계로써 각 관련 업체 및 주무부처의 의견조율을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2단계에서는 각 공종별 설비감리와 단일화된 건축감리 기준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안은 별도의 건설감리 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건설관리기본법에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건설감리의 통합 업무 수행은 건축주와의 계약을 통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4. 결 론

건설감리는 단순히 건축물의 안전성과 질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분야의 핵심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건설 생산 방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각 감리 분야에서는 각 공종별 감리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 기득권적 이해관계에 얹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감리 통합화를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각 주무부처와 각 공종별 관련 협회 및 기술인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통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종의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설감리 통합위원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건축규제 통합관리 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